

해양시설의 범위(제3조 관련)

시설의 종류	범위
1.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(비축을 포함한다) 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	계류시설(돌핀), 선박과 저장 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, 저장시설, 자가처리시설
2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	저장시설, 교반(회저어 섞음) 시설, 처리시설